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 6. 20.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923
-----------	-----

2023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30.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 6. 1.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출내역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10개 사업, 총 35건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40,000,000	16,557,206	14,981,598	1,359,059	216,549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주요내용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용결정액 165억 5천 7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49억 8천 2만원(90.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천 9백만원(8.2%), 사용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2억 1천 7천만원(1.3%)원임.

2. 검토의견

가. 총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0억원으로 총 36건의 사업에 165억 5천 7백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49억 8천 2백만원(90.5%)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천 9백만원(8.2%)이며,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1.3%인 2억 1천 7백만원임.

나. 지출결산

1) 예비비 지출 내역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지방재정법」 제43조²⁾).

○ 2022회계연도의 예비비 예산액(400억원)은 전년도 예산액(112억 2천만원) 대비 356.5% 증가하였으며, 사용결정액(165억 5천 7백만원)은 전년도(56억 5천 7백만원) 대비 292.7% 증가하였음.

[표-1]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2	40,000	36	16,557	14,982	1,359	217
2021	11,220	19	5,657	2,850	2,577	230
증감	28,780	16	10,900	12,132	△1,218	△13

- 1)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일반예비비 사용 내역

- 2022회계연도의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2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2천만원 대비 304.7% 증가하였으며, 사용결정액(62억 5천 6백만원)은 전년도(43억 8천 3백만원) 대비 142.7% 증가하였음.

[표-2] 일반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2	22,000	18	6,256	6,080	0	175
2021	7,220	13	4,383	1,648	2,577	158
증감	14,780	5	1,873	4,432	△2,577	17

- 일반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결정액이 가장 높은 사업은 학교보건관리의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도구 구매(42억 2천 6백만원)’로 정부의 전면등교 결정에 따라 3월 개학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긴급 배부하기 위해 2022년 2월 및 3월에 예비비 사용이 승인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도구 구매’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2월 및 3월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도구 구매’를 예비비로 42억 2천 6백만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2022년 2월 및 3월에 170억 1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의 불용액은 전용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금액보다 큰 294억 5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0.2%)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지출이 불필요했음을 의미함. 이러한 교육청의 무계획적이고 안이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3]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구입' 예산 확보 내역

(단위: 천원)

추경(1차)	전용	예비비	특별교부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40,000,000	17,016,847	4,226,400	11,987,609	73,230,856	43,774,250	29,456,606

[표-4] 일반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	사유
				증	감		
		체육건강문화예술과	163,724	1,700	1,700	2022.2.10.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당국의 검사체계 변경으로 신학기 개학 후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자가 검사키트 비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으로 인한 학교단위별 자체 구매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교육청의 물품 일괄구매를 통한 신속한 하곡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회계전출금(620) 예산 일부를 운영비(210)로 전용
		학교보건관리	163,724	1,700	1,700		
		운영비	54,262	1,700	0		
		학교회계전출금	109,462	0	1,70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54,262	12,000	12,000	2022.2.24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새 학기(3월) 전면 등교 대비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구입 및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예산확보를 위해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회계 전출금(620) 예산 일부를 학교 보건관리 운영비(210)로 전용
		학교보건관리	54,262	12,000	0		
		운영비	54,262	12,000	0		
		학교환경위생관리	53,395	0	12,000		
		학교회계전출금	53,395	0	12,000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0월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 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8천 8백만원을 사용결정하고 지출함.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패소는 2021년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원고승소판결이 났던 사안으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 결정금 지급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³⁾ 교육청은 동 사업예산을 별도의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안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였던 바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예비비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서 서울시교육청은 재해·재난 등의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 여부, 예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용 등의 제도 활용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야 할 것임.

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사용 내역

- 2022회계연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180억원)은 전년도 예산액(40억) 대비 450% 증가하였으며, 사용결정액(103억 1백만원)은 전년도(40억 2천 1백만원) 대비 142.7% 증가하였음.

[표-5] 목적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2022	18,000	18	10,301	8,901	1,359	41,069
2021	4,000	7	4,021	1,329	2,577	116
증감	14,000	11	6,280	7,572	△1,218	40,953

3)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

원고	피고	1심 판결일	결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세화고)	서울시교육감	2021.2.18	원고 승
학교법인 신일학원(신일고)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송문고)	서울시교육감	2021.3.23	원고 승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이대부고)	서울시교육감	2021.5.14	원고 승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 학교법인 한양학원(한대부고)	서울시교육감	2021.5.28.	원고 승

- 목적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18건 중에 83.3%(15건)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발생하였는바, 대부분 2022년 7~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시설 복구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 요건을 충족하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7~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예비비 지출의 건 중에는 예비비 사용 승인 일자가 9월~11월에 승인된 사안들이 다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재해대책 관련 목적예비비에 대해서는 학교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3건의 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3건의 사업 중 ‘서울누원초 옥상방수 공사’ 사업의 경우 총 3억원의 예비비 사용결정 후 2.7%인 8백만원만 지출되고, 97.3%에 해당하는 2억 9천 2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됨.
- 동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옥상 누수로 교실 및 복도 누수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예비비 사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나 예비비 사용결정액의 97% 이상이 사고이월된 것은 방학기간 또는 다음연도에 공사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는 예비비 사용이 사안의 긴급성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 등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표-6]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사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사유
여의도고 긴급 화재복구	2,320	1,310	1,010	0	2022.6.10	[여의도고] 화재로 급식실등, 정보관 등 피해발생하여 원만한 학생급식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공사 비용
서울누원초 옥상방수 공사	300	8	292	0	2022.9.19	[누원초] 집중호우로 인한 옥상 누수로 심각한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방수 공사 실시
방현초 및 반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	208	150	57	6	2022.9.19	[방현초, 반포고] 집중호우로 천정, 벽, 창호 등에 누수피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 비용

I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